의안번호	2214994
의 뢰 인	김준형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계번호	25D677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0억 8,800만원(연평균 12억 1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～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516	1,152	1,188	1,224	1,262	5,342	1,068
사업비	91	159	162	165	169	747	149
합계	607	1,311	1,350	1,390	1,431	6,088	1,218

주: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, 2026년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관경비, 사업비는 7개월치를 반영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4 (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) 신설	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,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・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,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둠(제1항)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하며, 위원은 정당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함(제3항)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(제4항)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8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의4 (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경우, 의원의 입법 및 예산심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

❑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위원회의 사무를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중 공무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위원회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함[1)]

○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,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,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현재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,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및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등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며,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이고, 국제개발협력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등 업무는 사업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 등 사업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이루어지고 있음

○ 개정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신설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관으로

1) 국회의원 수는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사항으로,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할 경우, 인력재배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여, 추계에서는 인력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음

❑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회의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국회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[2)]

❑ 개정안 부칙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(안 제46조의4 신설)

❑ 추계에서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데 따른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

❑ 현재 상임위원회 중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인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로, 정원이 각각 11명, 9명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,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지원 공무원 인력규모는 10명으로 가정함

[표 2] 제21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의안 접수건수 및 정원 현황

(단위: 명, 건)

	성평등가족위원회	정보위원회
정원	11	9
제21대 국회 의안 접수건수 (2020.5.~2024.5.)	442	27

자료: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(2024.6.24) 및 의안정보시스템

2) 국회 예산 중 '국회청사유지및관리(2033-300)사업' 예산으로 2025년 57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사무공간 확보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증원인력 10명에 대한 직급별 배분은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의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함

[표 3]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직급별 구성 추정

(단위: 명)

	수석전문위원	전문위원	3~4급	4~5급	6	7	8	9	합계
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	1	1	1	2	1	1	1	2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위원회 지원 공무원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를 추계함

○ 인건비는 2026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[3]하여,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3.0%를 적용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요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
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(2024~2026)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.0%를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[4]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0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6년 1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[5]를 곱하여 산출함

3) 수석전문위원 및 4~5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4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(2026. 1.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기관부담률(%)	13.067	13.129	13.193	13.285	13.379

5)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980,000원임

[표 4]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384	950	978	1,008	1,038	4,358
기관부담금	50	125	129	134	139	577
기본경비	32	78	80	83	85	357
자산취득비	50	0	0	0	0	50
합계	516	1,152	1,188	1,224	1,262	5,342

주: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, 2026년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관경비는 7개월치를 반영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(사업비)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사업비는 위원회의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2026년 운영경비의 평균 1억 5,600만원[6]으로 가정하고,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6년 1월)한 소비자물가상승률[7]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

[표 5]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사업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사업비	91	159	162	165	169	747

주: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, 2026년 사업비는 7개월치를 반영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❑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0억 8,800만원으로 추계됨

6) 2025년 운영경비는 성평등가족위원회 1억 5,500만원, 정보위원회 1억 5,300만원임
7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월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, %)	1.9	2.0	2.0	2.0	2.0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 등	516	1,152	1,188	1,224	1,262	5,342
사업비	91	159	162	165	169	747
합계	607	1,311	1,350	1,390	1,431	6,088

주: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, 2026년 인건비, 기관부담금, 기관경비, 사업비는 7개월치를 반영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 결과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및 사업비 규모를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평균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증원인력 및 사업비, 환경노동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부터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